

과천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4호
개정 2020.5.8. 규정 제37호
개정 2022.5.3. 규정 제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과천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남성과 여성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본부장)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②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과천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면 재공고를 실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후 2배수 추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장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혹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기업의 경영에 상근하여 직접 참여한 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기업의 경영에 상근하여 직접 참여한 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에서 공무원 4급 이상 상당직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과천도시공사(공단 포함)에서 3급이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6.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경영 및 공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05.08.)

7.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③ 상임이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과천도시공사(공단 포함)에서 3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공무원 5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4. 상장기업의 임원급(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2022.5.3.)

5. 도시개발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등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

고 경영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자(신설 2022.5.3.)

④ 비상임이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사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2.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3. 지방공기업의 기타 경영 및 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개정 2022.5.3.)

4.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
(신설 2022.5.3.)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및 해당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 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비상임이사 제외)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2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면 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지 제5호서식 세부추천사유 별지 제6호서식 및 선발경과 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⑦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과정 공개)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7호, 개정 2020.5.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76호, 개정 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2.5.3.)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사장)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 주택산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과천시·시의회·이용고객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임원)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 수지균형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서류심사 평가표 (사장) (제13조제6항 관련)

후 보 명 :

평가요소	배 점	평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분야의 전문적 지식	20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20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류심사 평가표(임원) (제13조제6항 관련)

후 보 명 :

평가요소	배 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면접심사 평가표 (제13조제6항 관련)

지원자 성명 :

구 분	평가항목	점 수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에 적응을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공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 강 (10)	1. 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실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임원 세부 추천사유 (제14조제4항 관련)

성명	현직	추천사유
(예시) ○○○	○○○○○소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제14조제4항 관련)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간	인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 ○명 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 ○.○),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 ○.○),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 ~ 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7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